

의안번호	제553호
의결 연월일	2024년 4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4월 12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3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12일

발 의 자 : 이정범 · 김현문 · 박병천
박용규 · 박재주 · 유상용
조성태 의원

1. 제안 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2020년 약 9억 5천만 원, 2021년 약 16억 4천만 원, 2022년 약 16억 9천만 원 ^{2023행감자료}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억제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노력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려 함.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나.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등(안 제4조)

- 라. 실행계획 수립(안 제5조)
- 마. 실태조사(안 제6조)
- 바. 지도·점검(안 제7조)
- 사. 표창(안 제8조)
-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배식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목표 달성 방안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 학교급식소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 등)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